

광주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521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8. 12.

판 결 선 고 2022. 9. 2.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53732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2. 1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 2. 27. 접수 제32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4. 21. ‘C은 원고에게 25,420,875원 및 그중 11,149,540원에 대하여 2009.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876040)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사망하자 2018. 2. 12.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을 하여 2018. 2.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다. C은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가액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수익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귀속시킨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피고 소유인데 세제 혜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 문제로 망인 명의로 해 두었다가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복귀되었을 뿐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유현주, 판사 신호승

별 지 목 록

[토지]

광주광역시 서구 대 139㎡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멘벽돌조 시멘와즙

단층주택

57.42㎡

부속건물

시멘벽돌조 스라브즙

단층물치

3.3㎡

시멘벽돌조 스라브즙

단층물치

1.65㎡

